

# 1





## Contents

1

1. 2017년도 자활지원정책방향 설명 4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 김우기 과장
2. 2017년도 자활근로사업안내 주요 개정내용 13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 김영효 주무관
3. 근로능력평가, 자활기업 21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 정용구 사무관
4. 자산형성지원사업 29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 지세영 사무관
5. 자활인프라 운영관리 41  
2017년 지역자활센터 운영 주요변경사항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 정도희 사무관
6. 공공사례관리와 우수사례 47  
나우심리상담센터 / 방미나 소장



# 1. 2017년도 자활지원정책방향 설명





**CONTENTS**

**2017년도  
자활지원정책 방향**

**I 자활사업 추진 현황**

1. 자활사업 주요 현황  
2. 2016년 자활사업 주요 성과



3

**1. 자활사업 주요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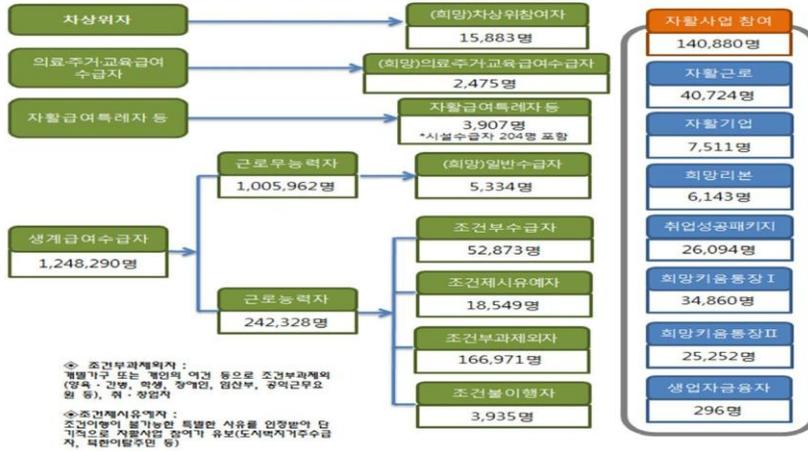
**2017년 자활사업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2016년	2017년	증감	%	주요 명세
계	458,815	434,492	△24,323	△5.3	
자활사업	328,573	289,448	△39,125	△12.0	
-자활근로	327,285	288,061	△39,224	△12.0	'16년 45천명 수준 지원 예정(△5천명 감소)
-자활사례관리	1,188	1,387	199	16.7	77명 지원(전년동)
자활지원센터운영지원	51,412	53,017	1,596	3.1	광역 및 지역자활센터 3% 인상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 탈수급지원	67,847	80,401	12,554	18.5	희망 I : 단가 10% 인상(300→332천원) 희망 II : 신규 1만45백가구 내일키움통장: 전년 동
근로능력 심사 및 평가운영	10,983	11,626	643	5.8	인건비 : 3% 인상

4

# 1. 자활사업 주요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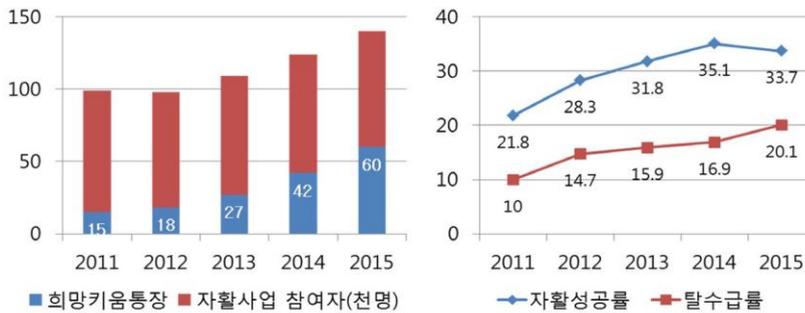
## 자활사업 참여 현황 (2015년 말 기준)



# 1. 자활사업 주요 현황

## 자활 성공률 및 탈수급률 추이

- ◎ 희망키움통장 가입가구 수 증가 등 전체 자활사업 참여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 ◎ 탈수급률은 증가하였으나, 경기 위축에 따른 취창업률 감소 추이로 2015년 전체 자활 성공률은 다소 감소



## 2. 2016년 자활사업 주요 성과

### 근로능력 판정제도 개선

- ③ 2회 연속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은 경우, 의학적 평가결과가 2~4단계 일 때 고착(2년 → 3년), 비고착(1년 → 2년)으로 변경
- ③ 2회 연속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은 5·6급 장애인이 계속 장애를 유지하는 경우 평가 없이 '근로능력 없음' 인정
  - \* 진단서 발급비용 등 연간 약 6억원 부담 경감 기대

### 자활 사례관리 강화

- ③ 자활사업 참여자 중 근로 미약자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자활센터의 자활사례관리 전문화를 위한 매뉴얼개발·교육 등 관리 시스템 정비
  - \* 자활 사례관리 지원센터 확대('15년 60개소 → '16년 77개소), 사례관리 매뉴얼 정비 및 담당자에 대한 성과수당 지급 방안 시행(10월), 우수 사례관리 컨퍼런스 등 운영

7

## 2. 2016년 자활사업 주요 성과

### 고용·복지 연계 활성화

- ③ 고용복지플러스 센터 설치 확산('15년 40개소 → '16년 70개소)
  - 한 곳에서 복지·고용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받을 수 있어 서비스 연계건수가 급증, 특히 복지→고용 연계 활성화
    - \* '16년 10월 말 기준 서비스 연계실적 91,678건, 복지→고용 연계 서비스 11,254건
  - 고용·복지 서비스 간 상호 수혜이력을 공유하고 서비스 연계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편(7월)
- ③ 조건부과제외자 장기 경제활동 단절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 양육·돌봄 등의 사유로 조건부과 제외되었던 사람들에 대해 분기에 한번 상담을 받거나 교육에 참여하는 "맞춤형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제공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6월), 시행령 개정에 따른 지침시행(9월)
  - '16년 40개 지역 → '17년 70개 지역으로 확대

8

## 2. 2016년 자활사업 주요 성과

### 자산형성지원사업 성과 ① - 가입대상 및 지원 확대

- 희망키움통장 II 및 내일키움통장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내일키움 통장 지원액도 확대 ('16)
- 희망키움통장 II
  - (희망키움통장 II) 가입이 제한되었던 **소득하한 기준을 삭제**하고 월 가구 소득에 포함되는 **승용차의 소득환산율**을 완화하여 더 많은 차상위 가구가 가입할 수 있도록 **기준 완화**
- 내일키움통장
  - (가입 가능 사업단 확대) 가입 가능 사업단 을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는 "사회서비스 형" 및 "인턴 도우미형" 사업단까지 확대
  - (지원액 추가) 기존 매출액에서의 지원에 더하여 **정부 지원금 추가 매칭 (월 5 또는 10만원) 지원**

## 2. 2016년 자활사업 주요 성과

### 자산형성지원사업 ② - '16년 신규 가입자 증가

- 가입기준을 완화한 **희망키움통장 II** 와 대상자 및 지원액을 확대한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전년 대비 각각 **31.6 % 42.7% 증가**

**희망키움통장 I 탈수급률 67.6%,**

- - '10년~'12년 가입한 18천 가구 중 12천 가구에 해당



## 2. 2016년 자활사업 주요 성과

### 자활기업 활성화 지원

#### ◎ 자활기업 현황조사

- 총 1,760개소 창업, 611개소 폐업, 현재 **1,149개소 운영 중**
- (직접지원) 한시적 인건비 등 1,174억원 (간접지원) 생상품 우선구매 등 119억원

#### ◎ 자활기업 활성화 지원

- 자활기업 지속발전 자문회의 운영(전문가 등 11인 구성)
- 자활기업 창업 전 의무교육 실시(한국자활연수원, 4회 115명 이수)
- 자활생산물 판로 지원: 우체국 쇼핑몰 활용 MOU체결 및 자활생산물 입점 등





## 2. 2017년도 자활근로사업안내 주요 개정내용







## 1. 대상자 선정

### 조건부과제외자 제도 개선

- ◎ 조건부 수급자의 범위를 근로능력있는 수급자 전부로 확대하고 법령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조건부과를 유예하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8조 개정

현행	개정안
양육·돌봄 사유가 있는 자, 대학생, 60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자 ☞ 조건부과에서 당연 제외	양육·돌봄 사유가 있는 자, 대학생 60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자 ☞ 원칙적으로 고용복지+센터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고용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조건으로 부관하되, 프로그램 참여가 적절하지 않거나 어려운 경우 조건부과 유예

- ◎ ‘조건부과제외’ 용어를 ‘조건부과유예’로 일괄 변경

2

## 1. 대상자 선정

### 차상위 자활 참여자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개선

- ☉ 자동차 기준 특례 신설
  -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환산율 4.17% 적용
  - ①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
  - ② 질병·부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소유차량
  - ③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
  - ④ **(신설)** 차량 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차량

## 2. 자활근로사업 운영 개선

### 자활근로 급여 단가 인상

- ☉ 자활근로 유형별 급여단가(실비제외)를 '16년 대비 약 3% 인상  
(단위 : 원/일)

구분	2016년	2017년	증감액(률)	비고
시장진입형 복지·자활 도우미형, 인턴형	34,880	36,010	3.2%	1일 8시간
사회복지시설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31,270	32,300	3.3%	
근로유지형	22,550	23,320	3.4%	1일 5시간

## 2. 자활근로사업 운영 개선

### 자활사업 참여자 근로여건 개선

- ④ 유급휴가 및 경조사 기준 확대
  - 설, 추석 연휴기간 중 1일에 한하여 유급휴가 실시
  - 사망으로 인한 경조사 휴가의 경우 2일에 한하여 추가로 무급휴가 가능
  - \* 게이트웨이 과정 참여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 ④ 기술자격수당 지급액 일원화
  - 전담관리수당을 지급받는 자도, 기술자격 급여 지급 대상인 경우 100% 지급(기존 50%)
- ④ 경조사로 인한 결근은 자립성과급 지급을 위한 결근일 산정 시 제외

5

## 2. 자활근로사업 운영 개선

### 자활근로 사업비 활용 기준 개선

- ④ 자활참여자 점심 식대 사용 가능(1일 1인당 5천원 이내)
  - \* 현금 지급 불가, 사업단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지급(의무지출 사항이 아님)
- ④ 자활 사업단 점포임대료 사용 가능
  - 자활활성화 지원금을 우선 사용하되, 부족한 부분은 매출액(매출적립 이후 금액) → 자활근로 사업비 순으로 사용 가능
  - 사업비에서 임대료를 사용하는 경우 지자체 사전 승인 필요
  - \* 지자체 담당자는 사업단 특성을 고려하여 임대료 사용 및 금액의 적절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

6

## 2. 자활근로사업 운영 개선

### 매출액 관리 기준 명확화

- ③ 지역자활센터 매출액 관리 시스템 변경
  - (기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변경) 자활정보시스템
- ③ 부가가치세 관리기준 명확화
  - 부가가치세는 총 매출액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고 연도말 잔액은 자활기금과 중앙자산펀드로 적립
- ③ 매출액 등 발생 이자 적립 방법 명확화
  - 매출액, 매출적립금, 수익금 등으로 발생한 이자는 중앙자산키움펀드 및 자활기금으로 적립

## 3. 조건불이행 처리 방침 명확화

### 사업 실시기관 및 지자체 업무 처리 기준 명확화

- ③ 사업 실시기관(지역자활센터 등)
  - 조건 불이행자 발생 시, 불이행으로 인해 생계급여가 중지될 수 있음을 **사전 안내**
  - **사전안내**가 1년에 3회 이상 **반복**될 경우 **시군구에 보고**하여 불이행 **결정 처리 요청**
- ③ 지방자치단체(시군구)
  - 자활실시기관으로부터 조건 불이행 보고를 받은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행복e음 상담 불이행 등록**
  - **중지 결정**을 한 경우 즉시 해당 **조건부수급자에게 생계급여 중지기간, 중지액 및 급여의 재개에 관한 사항을 통지**

감사합니다.



# MEMO



### 3. 근로능력평가, 자활기업





# 2017년 주요 변경내용

## 1. 근로능력판정제도

## 2. 자활기업 지원

## 3. 정부양곡 할인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사무관 정웅구

## 1. 근로능력판정제도

### 1-1.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16.6.10, 근로능력판정 유효기간 확대)

□ (배경) 평가 실익이 미미한 대상까지 매년 근로능력을 정기적으로 평가함에 따라  
피평가자의 불편 및 부담이 증가, 이를 해소하기 위함.

□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된 경우 판정 유효기간은 판정을 받은 날부터 1년. 다만,

▶ 정기평가 결과 의학적 평가가 2~4단계이고, 질병이나 부상이 고착되어 2년 이상  
호전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의 유효기간을 변경(2년 → 3년)

\* 근로능력 없음 비율(99.6%)

▶ 정기평가 결과 의학적 평가가 2~3단계이고, ‘비고착 질환’으로 최종 ‘근로능력 없음’  
으로 판정되는 경우의 유효기간을 변경(1년 → 2년)

\* 근로능력 없음 비율(97.7%)

## 1. 근로능력판정제도

- ▶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5~6급 장애인
    - 정기평가에서 의학적평가가 2~4단계에 해당되고, 최종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 시에 **해당 등록 장애를 유지하고 있으면 정기평가를 유예**
- \* 근로능력 없음 비율(98.5%)

□ (기대효과) 피평가자의 진단서 발급비용 등 약 6억6천만원 정도 부담 경감

3

## 1. 근로능력판정제도

### 1-2. 근로능력판정업무 수행 시 유의 사항

- ▶ 근로능력판정 구비서류가 판정에 필요한 서류가 맞는지 확인
- ▶ 평가 구비서류가 미비하거나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기재사항 흠결 등 형식적인 하자가 있는 경우 공단에 의뢰 전 대상자에게 자료보완 요구
- ▶ 최초 상담 및 서류접수 시 가장 중한 질환의 진단서를 접수(진단서 발급 비용을 고려, 2종류 이상의 질환이 있는 경우 가장 중한 2개 질환에 대해 평가함에 유의)
- ▶ 근로능력평가진단서는 최근 2개월 이내 발급까지 유효

4

## 1. 근로능력판정제도

### ▶ 근로능력 평가 의뢰자의 취소사유\* 발생시 즉시 중단지사에 취소요청

- 취소처리가 지연될 경우 공단의 평가가 진행되어, 평가대상자의 민원 발생 (2016년의 경우 접수 180,449건 중 취소 16,779건, 반려 4,761건)

\* 사망, 수급권 상실 또는 수급자격 미해당, 평가신청 철회, 착오 의뢰, 기타 평가 불필요 등

5

25

## 2. 자활기업 지원

### 2-1. 지역자활센터당 자활기업 설립·관리 목표 문항 삭제

- ▶ (기존) 자활센터는 기관당 최소 3개 이상의 자활기업 설립 및 관리를 목표로 추진
- ▶ (변경) 자활사업 실시기관은 자활기업 설립 및 관리를 적극 추진

### 2-2. 자활기업 설립 방식

- ▶ (기존) 조합형태로 설립을 추진하더라도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함
- ▶ (변경) 사업자 등록이 없는 경우 자활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음

6

## 2. 자활기업 지원

### 2-3.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의 자활기업 대표 겸직 금지 신설

- ▶ '17.1.1.부터 자활사업 실시기관 종사자(센터장 포함) 명의의 사업자 등록 및 대표직 겸직을 금지

☞ 종사자(센터장 포함)가 사업자등록 상 대표인 기존 자활기업은 '17.12.31.까지 사업자 등록을 변경

### 2-4. 자활기업 창업전 교육 의무화

- ▶ 자활기업 활성화 방안으로 '16년부터 시행 (4회 115명) 해 오던 것을 지침에 명시, 미 이수 시 창업 불가 (교육 이수 유효기간은 1년)

☞ 자활기업 창업 예정 사업단 중 ½ 이상이 자활연수원의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인정 시 교육수료증 제출)

※ 자활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 중 1인이 창업 후 3년 이내에 이수하여야 하는 '경영자과정(보수교육, 자활연수원과 광역자활센터 공동 주관)'은 권고사항으로 시행

## 2. 자활기업 지원

### 2-5. 우수자활기업 지원 근거 신설

- ▶ 우수 자활기업은 지원기간 종료 후 1년의 기간 내 지원 가능

- (재 원) 중앙자산키움펀드
- (선정절차) 복지부(공문시달) → 시군구(추천) → 복지부, 중앙자활(선정) → 지원(중앙자활)
- (지원내용) 기능보강비, 자활기업 규모화, 공공기관 쇼핑몰 입점 등

### 2-6. 자활기업 한시적 인건비 신청 기간 확대

- ▶ 신청기간 : (기존)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 → (변경)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

※ 자활기업 공동대표자의 한시적 인건비를 신청할 때는 1인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근로(고용)계약서 대신 사업자등록증 제출로 가능하도록 명시

## 2. 자활기업 지원

### 2-7. 자활기업 한시적 전문가 인건비 지원 기간 및 범위 확대

- ▶ 지원기간 : (기존) 최대 3년 → (변경) 최대 5년
- ▶ 전문가 범위 : 3년 이상 자활사업에 종사한 자로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포함

### 2-8. 자활기업 인정취소 절차 신설

- ▶ 인정서 반납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내역 환수 방법 및 절차를 명시
  - \* 자활기업이 인정서를 반납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인정 취소
  - \* 인정 취소, 자활기업 해체(개인창업) 시 창업자금으로 지원받은 자활기업의 자산은 재사용 또는 중앙자산키움펀드와 자활기금으로 조성
  - \* 자활기업 창업 후 발생한 수익금은 구성원에게 배분 가능하나, 창업 자금으로 지원받은 현금 및 현물은 구성원에게 배분 불가
  - \* 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은 인정취소 등에 따른 결과를 자활정보시스템에 입력, 중앙자산키움펀드와 자활기금 조성 결과를 10일 이내에 보장기관과 중앙자활센터에 보고

9

27

## 3. 정부양곡 할인 지원

###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한 '정부양곡할인 사업'의 지원내용 확대

- ① 생계·의료수급자의 양곡할인 지원율을 대폭 상향(50%→90%)
  - ▶ 10kg/1,400원, 20kg/2,800원으로 구입 가능
  - \* 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2016년과 동일하게 50% 지원(10kg/7,100원, 20kg/14,000원)으로 구입 가능
- ② 가구당 월 양곡구입량 제한 폐지
  - ▶ 4인 이상 가구의 경우 월 40kg까지 구매가능 → 가구원수 당 매월 10kg 구매 가능
  - \* (기존) 4인 이상가구 40kg 까지 신청 → (변경) 5인/50kg, 6인/60kg...
- ③ 양곡구입 신청자가 포장단위 선택 가능
  - ▶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7, 8월에만 10kg 포장단위 구매가 가능 → 매월 10kg 구매 가능
  - \* 2인 가구의 경우 (기존) 20kg 1포 신청 → (변경) 20kg 1포 or 10kg 1포 선택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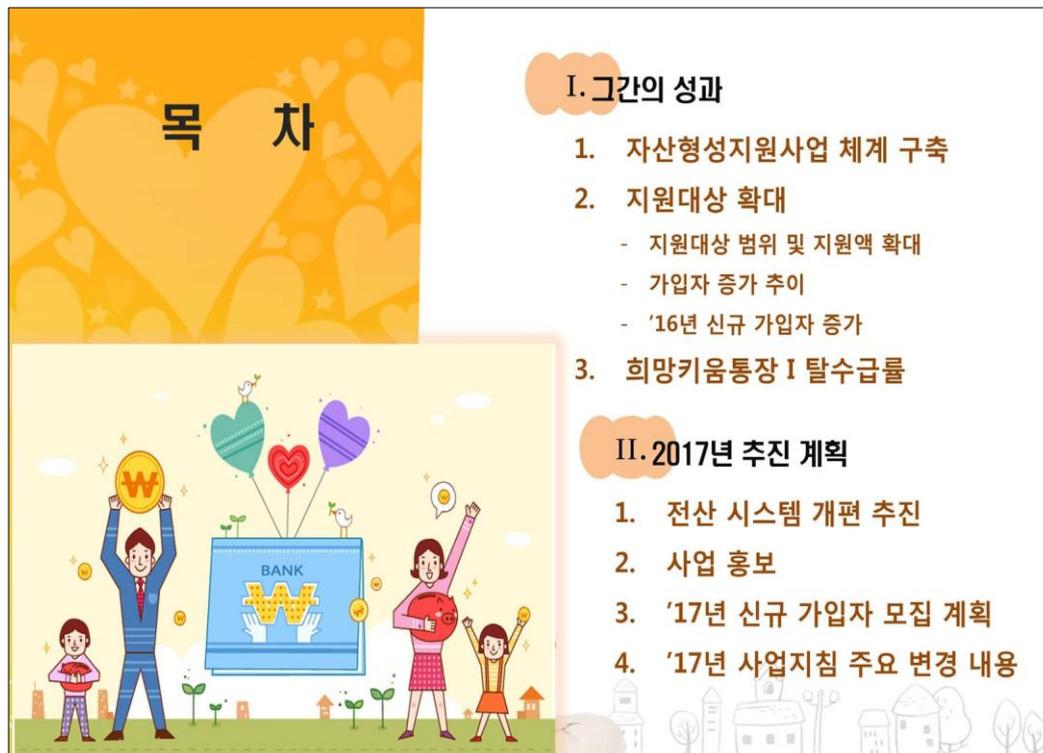
10

**감사합니다.**

# 4. 자산형성지원사업







# I 그간의 성과

1. 자산형성지원사업 체계 구축
2. 지원대상 확대
  - 1) 지원대상 범위 및 지원액 확대
  - 2) 가입자 증가 추이
  - 3) '16년 신규 가입 증가
3. 희망키움통장 I 탈수급율

## 1. 자산형성지원사업 체계 구축



◆ 저소득 근로자 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  
외형적 틀 마련 ('14년)

◆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 자산형성지원사업 역할 조정 ('15년)



지속적인 근로유인 및 탈빈곤 지원을 위한 저소득 근로자 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체계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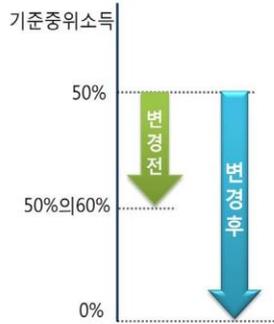
## 2. 지원대상 확대



### 1) 지원 대상 범위 및 지원액 확대

희망키움  
통장II

◆ 최저 소득 가구도 가입할 수 있도록 기준 완화하여 가입대상 확대



내일키움  
통장

◆ 가입 가능 사업단 유형 확대



내일키움  
통장

◆ 정부지원금 추가 지원(5/ 10만원)



## 2. 지원대상 확대



### 2) 누적 가입자 증가 추이



통장별  
누적  
가입수

통장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희망키움 I	10,698	14,791	17,837	26,920	32,165	34,860	37,913
내일키움				5,274	7,490	11,162	15,357
희망키움 II				10,259	25,252	43,706	

## 2. 지원대상 확대



### 3) '16년 신규 가입자 증가

#### 내일키움 통장

- ◆ (지원목적) 자활근로 참여자의 탈수급 또는 일반 노동시장으로 취창업
- ◆ '16년 지원 확대로 신규 가입 증가



#### 희망키움 통장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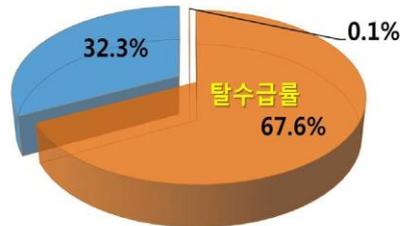
- ◆ (지원목적) 저축습관 및 자산형성
- ◆ '16년 가입요건 완화,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로 신규 가입 증가
  - 지역별 사업안내 및 버스 광고판 홍보 및 지하철 동영상 홍보 등



## 3. 희망키움통장 I 탈수급율



- ◆ 3년만기 경과한 ('10년부터 '12년 가입) 18천가구 중 12천 가구가 탈수급(67.6%)



#### ◆ 탈수급 사유

- ① 근로(사업)소득 증가 95.0%
- ② 가구원 변동 1.0%
- ③ 재산소득 증가 4.0%

- 탈수급 해지 12,063 가구
- 지급요건 미충족 해지 5,759 가구
- 통장 유지 15가구

## II 2017년 사업 추진 계획

1. 전산 시스템 개편
2. 사업 홍보
3. 신규 가입자 모집 계획 및 일정
4. 2017년 사업지침 주요 변경 내용

### 1. 자산형성지원 전산 시스템 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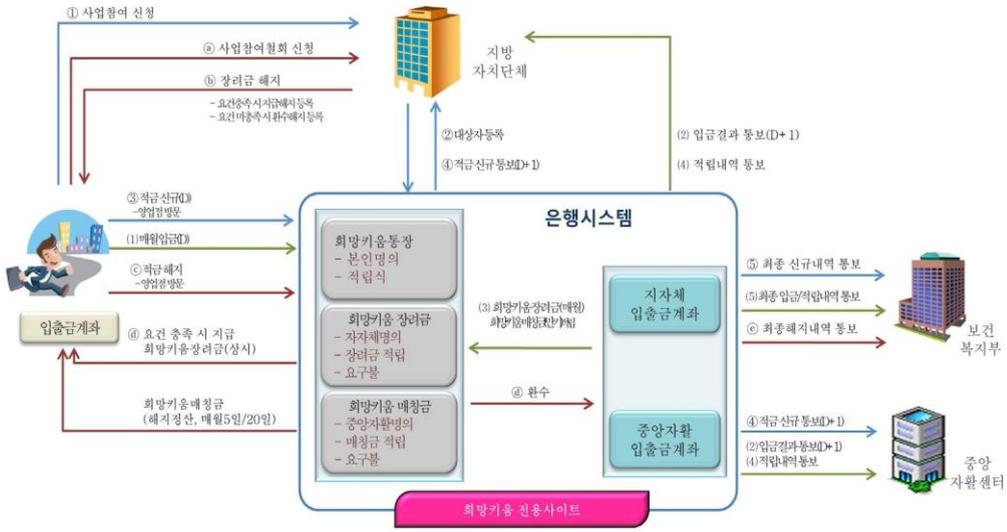
#### ◆ 통장업무 전산처리 시스템 전면 개편



#### ◆ 개선방향 📖 업무량은 ↘ 편리성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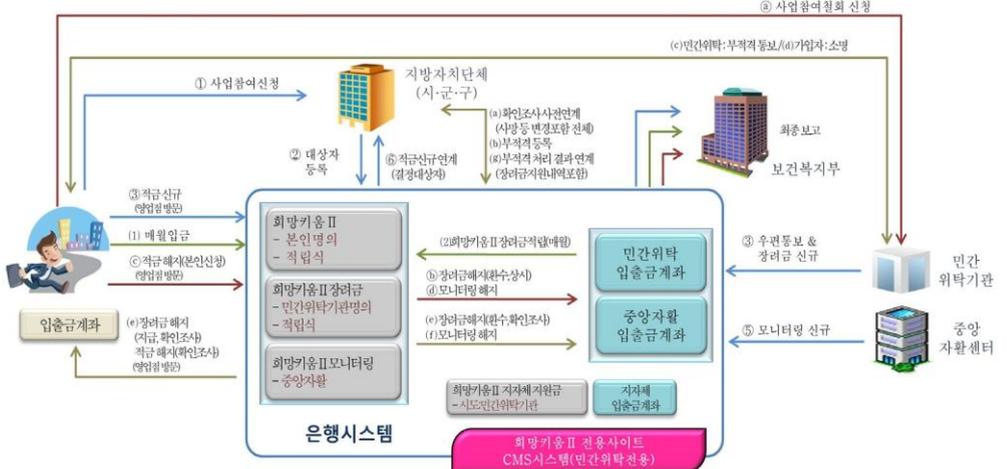
- ◆ 한곳에서, 한번의 클릭으로 계좌 개설/적립/해지
- ◆ 월 적립액 행복e음에서 자동 확인
- ◆ 행복e음 에서 다양한 통계 보고서 가능

### 1. 자산형성지원 전산 시스템 개편 1) 현 계좌관리 프로세스 (희망키움통장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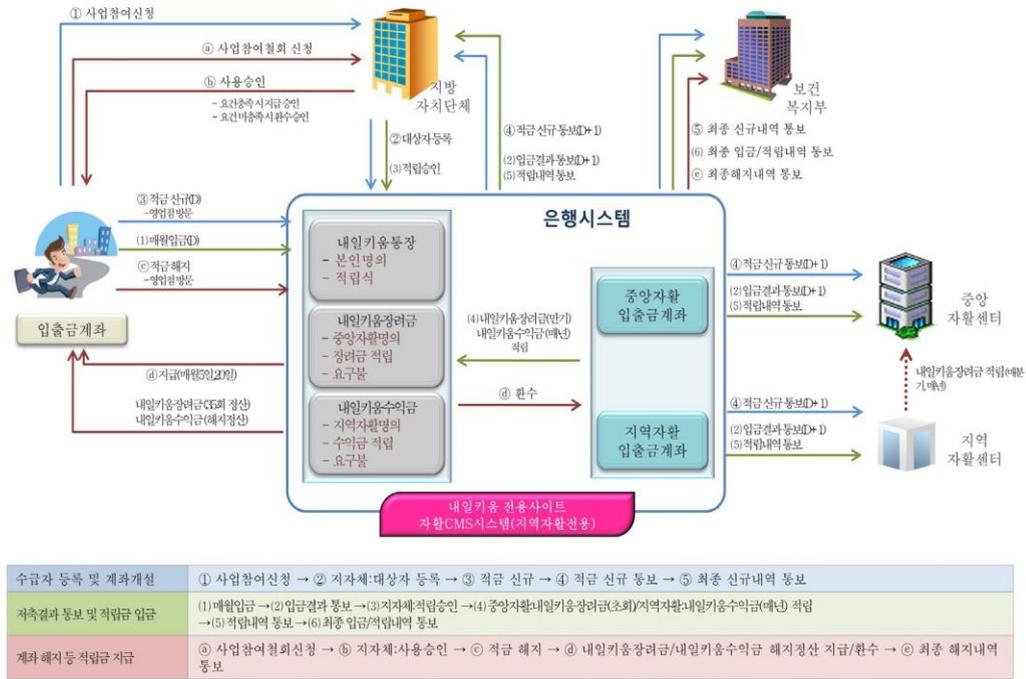
수급자 등록 및 계좌개설	① 사업참여 신청 → ② 지자체 : 대상자 등록 → ③ 적금 신규 → ④ 적금 신규 통보 → ⑤ 최종 신규내역 통보
저축결과 통보 및 적립금 입금	(1) 매월입금 → (2) 입금결과 통보 → (3) 지자체 : 희망키움장려금 신규 및 기존 장려금 지급 & 중앙자활 : 희망키움매칭금 지급(초회(O), 해지 시 장산) → (4) 적립내역 통보 → (5) 최종 입금/적립내역 통보
계좌 해지 등 적립금 지급	⑥ 철회 신청 → ⑦ 지자체 : 장려금 해지 → ⑧ 적금 해지 → ⑨ 희망키움장려금/희망키움매칭금 해지정산 지급/환수 → ⑩ 최종 해지내역 통보

### 1. 자산형성지원 전산 시스템 개편 2) 현 계좌관리 프로세스 (희망키움통장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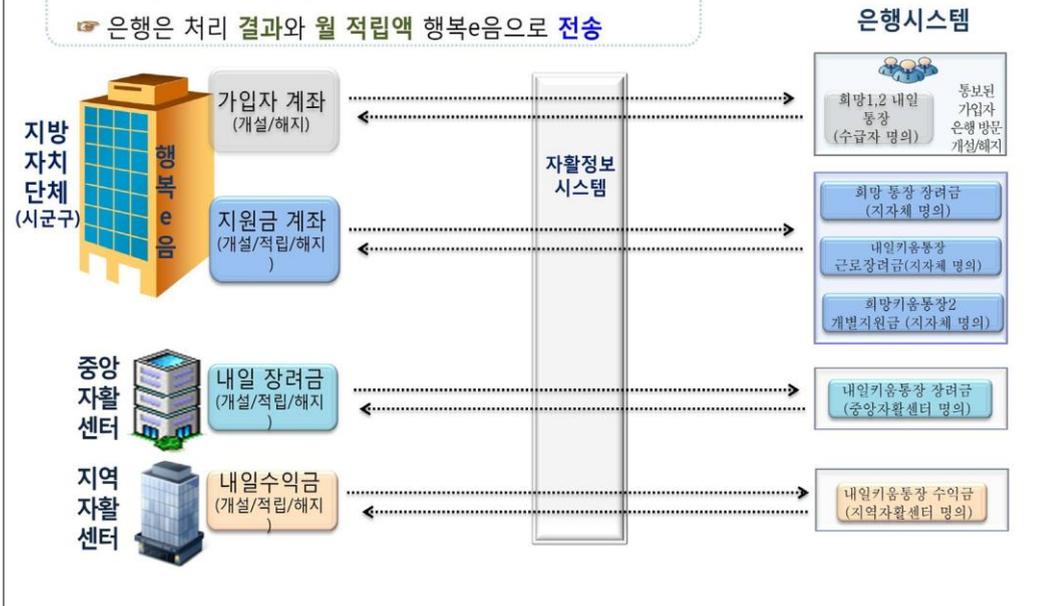
가입자 등록	① 사업참여신청 → ② 지자체 : 대상자 등록 → ③ 적금 신규 → ④ 민간위탁 : 우편통보 & 장려금 신규(초회 필수) → ⑤ 중앙자활 : 모니터링 신규 → ⑥ 지자체 : 장려금 신규 연계 → ⑦ 보고
적립금 입금	(1) 매월입금 → (2) 민간위탁 : 장려금 적립(매월) → (3) 보고
장려금 해지 (환수)	① 사업참여 철회신청 → ⑥ 민간위탁 : 장려금 해지(환수) → ⑦ 적금 해지 → ⑧ 중앙자활 : 모니터링 해지 → ⑨ 보고 * 매월 지자체 : 장려금 해지 동기화
확인조사 (환수/지급)	(a) 지자체 : 사망 등 변경사항 결정대상자 전체 연계(민간위탁 : 사망 환수해지 처리 후 결정대상자 전체 연계) → (b) 지자체 : 부적격 등록 → (c) 민간위탁 : 부적격 통보 → (d) 소명(1개월) → (e) 민간위탁 : 해지유지 처리 → (f) 중앙자활 : 모니터링 해지 → (g) 지자체 : 부적격 처리 결과 연계 → (h) 보고 * 매월 지자체 : 장려금 해지(환수/지급) 동기화

### 1. 자산형성지원 전산 시스템 개편 3) 현 계좌관리 프로세스 (내일키움통장)



### 1. 자산형성지원 전산 시스템 개편 4) 계좌관리 프로세스 (개편 후)

◆ 계좌 개설, 적립, 해지 통보, 행복e음에서 은행으로 전송  
 ☞ 은행은 처리 결과와 월 적립액 행복e음으로 전송



## 2. 사업 홍보



- ◆ 희망키움통장Ⅱ 가입자 발굴을 위한 홍보 계속
- ◆ 신규 홍보 아이템 발굴 노력

### 유관사업 연계 홍보

- 고용복지센터, 두루누리 사회보험
- 국토교통부 마이홈 센터, LH 주택 조사원 등 활용

### 영상 매체 활용

- 전국 지하철 역사 및 전동차

### 기 타

-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 리플릿 브로슈어 제작 배포

## 3. '17년 신규 가입자 모집 계획



### ◆ 신규 가입자 모집 규모 확대

#### 정기 모집 기간 확대

- (희망키움통장 I 및 내일키움통장) 2월 부터 총10회
- (희망키움통장Ⅱ) 2월부터 총 4회
- \* (기존) 희망 I 및 II 연 3회, 내일 연 8회

#### 지원가구 확대

희망키움 I 2.8천회  
 망키움 II 25천  
 내일키움 3천



## 4. 17년 지침 주요 변경 내용 ①



### ◆ 희망키움통장Ⅱ 가입 및 통장 유지 기준 완화

#### 가입 기준

##### [소득조사 기준]

- 2,000 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소득환산율 4.17% 대상 항목 추가
  1.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
  2. 질병·부상 등으로 불가피하게 소유
  3. 차령 10년 이상
  4.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 [소득 하한액]

- 기존 중위소득 50%의 60% 미만 소득 가구도 가입

#### 유지 기준

- [소득 하한액] 유지 하한 기준 삭제
- [소득 상한액] 기준 중위소득 60% → 기존 중위소득 70%

17

39

## 4. 17년 지침 주요 변경 내용 ②



### ◆ 지원금 사용 기준 완화 ➡ 참여자의 지원금 사용의 자율성 제고

#### [용도 증빙]

- 지원금의 100% 증빙 ➡ 지원금의 50% 이상

#### [사용용도]

- 주택구입·전월세·창업·교육비 등에 ➡ 결혼자금 추가

### ◆ 지원금 환수 해지요건 완화 ➡ 통장 환수·해지 사례 예방, 업무 혼선 예방

구분	대상 통장	현행	개선
근로소득액 연속 미달	희망 I	5월	6월로 통일
본인저축 연속 미납	희망 I, 희망 II, 내일	3월	
자활근로 연속 미참여	내일	5월	

18

### 4. 17년 지침 주요 변경 내용 ③



#### ◆ 희망키움통장 II 유지 자격 요건 완화

##### [근로활동 확인 기간]

- 정기 확인조사 당시 일시적 실업 상태의 경우
  - ☞ 직전 확인 조사일로 부터 당해 확인 조사일까지 기간 중 50% 이상 기간 동안 근로활동 하였으면, 통장 유지

구 분		현 행	개 선
조사시작일 현재 근로		통장 유지	통장 유지
조사시작일 현재 실업상태	직접 조사일~금번 조사일 기간 중 50% 이상 근로	통장해지	통장 유지
	직접 조사일~금번 조사일 기간 중 50% 미만 근로	통장 해지	통장 <b>해지</b>

# 감사합니다



## 5. 자활인프라 운영·관리

2017





# 2017년 지역자활센터 운영 주요 변경사항

2017. 1. 19.

## 목 차

1. 지역자활센터 규모평가 실시
2. 종사자 봉급월액표 변경
3. 공무원 복무규정 및 여비규정 준용
4. 퇴직적립금 및 시간외수당 지급 제한 명시
5. 지역자활센터 신규 지정 계획

## 1. 지역자활센터 규모평가 실시

### 1. 개요

- 3년 마다 지역자활센터의 운영규모를 평가하여 규모에 따라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를 차등 지원

### 2. 평가기준

- 조건부수급자 수 30% + 최근 3년 평균 참여자 수 70%

### 3. 평가결과 활용

확대형 (상위 25%)	표준형 (중위 50%)	기본형 (하위 25%)
263백만원(7명)	231백만원(6명)	197백만원(5명)

### 4. 평가결과 적용

- 2017년 평가 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적용

3/22

## 2. 종사자 봉급월액표 변경

### 1. 센터 운영비(인건비) 예산 증액

- (2016) 416억원 → (2017) 429억원(13억원, 3% 증)

### 2. 종사자 봉급월액표 변경

- 2016년 대비 전 직급 및 호봉 일괄 1% 인상  
- 인건비 자연 상승분(2%) 감안

### 3. 종사자 처우수준

- 2016년 기준,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비 91%로서 시설 중 가장 낮은 수준
-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인건비 증액 필요

4/22

### 3. 공무원 복무규정 및 여비규정 준용

- ◎ 지역자활센터는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이므로 공무원 규정에 준하여 운영할 필요



### 4. 퇴직적립금 및 시간외수당 지급 제한 명시

#### 1. 주요 내용

- ◎ 센터장이 모법인의 대표를 겸하는 경우 또는 유형다변화 시범사업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대표를 겸하는 경우에는 퇴직적립금 및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을 제외

#### 2. 지급제한 사유

- ◎ 지역자활센터의 센터장은 운영 법인이 고용하였으므로 근로자로서 퇴직적립금 및 시간외수당 지급 가능
- ◎ 그러나, 예외적으로 센터장이 운영법인의 대표를 겸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로 인정 곤란

## 5. 지역자활센터 신규지정 계획

### 1. 지역자활센터 현황

- ◎ 전국 248개 지역자활센터 운영 중
  - 2016년 251개소에서 3개소 지정취소(삼진아웃)

### 2. 신규지정

- ◎ 2017년 상반기 중 2개소 신규 지정 예정
  - 지역자활센터가 추가로 필요한 지역
  - 인천 옹진군 등 지역자활센터가 없는 14개 시·군·구

### 3. 신청 및 선정 절차

- ◎ 시·군·구는 자체심사를 통해 운영법인 선정 후, 사업 계획서 등 필요서류를 첨부, 시·도를 거쳐 복지부에 신청
- ◎ 복지부는 전문가 등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Thank you  
감사합니다

## 6. 공공사례관리와 우수사례





## 공공사례관리와 우수사례

Here&Now | 나우심리상담센터 방미나

### INTRO

그녀는 어떻게 회복되었나?



거리의 복서로 거친 삶을 살아가는 알리는 5살 아들의 갑작스런 등장으로 누나 집에서 거주하게 되고 생계를 위해 클럽에서 경호원 일도 시작하게 된다. 출근 첫 날, 알리는 싸움에 휘말린 범고래 조련사 스테파니를 돕게 되고 당당하고 매력적인 그녀에게 끌려 연락처를 남긴다. 스테파니는 유능한 범고래 조련사이지만 뭔지 모를 불안스런 일상을 지속하고 있다. 자신이 조련하던 파트너 고래로 인한 예기치 못한 사고로 하반신을 잃게 된 그녀. 스테파니는 깊은 절망의 끝에서 문득 알리를 떠올리게 된다.

러스트앤본 De rouille et d'os, Rust & Bone,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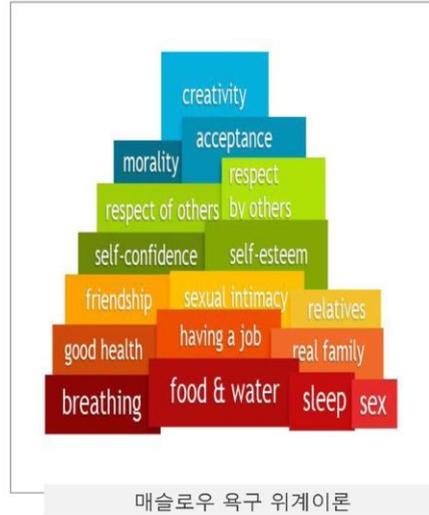
자활사업 참여자는 자신의 삶에서 어떤 기대와 변화목표를 가지고 있을까?

무엇이, 자활사업참여자를 변화 또는 회복의 길로 안내할까?

## 1 사례관리의 기본 개념

### 정의

만성적, 복합적 욕구가 있는 클라이언트와 가족의 사회적 기능 회복을 위해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체계적 사정과 지역사회와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적 실천방법이다(권진숙 외, 2012).



### 목적

- 1) **보호의 연속성** \_ 일정한 장소나 기간 동안 지속적 서비스 제공
- 2) **서비스의 통합성**  
\_ 자활참여자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기관의 서비스와 기능을 통합
- 3) **서비스 접근성** \_ 자활참여자가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원조
- 4) **사회적 책임성** \_ 자활참여자가 욕구에 적합한 효과적인 서비스와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효율적 서비스를 제공
- 5) **역량강화** \_ 직면한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직·간접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사례관리자의 도움 없이도 다양한 자원과 연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출처: 권진숙 외(2012). 사례관리전문가교육. 학지사

\* '서비스대상자, 이용자 또는 클라이언트'를 '자활참여자'로 일괄

특성

- 1) 지역사회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
- 2) 사회자원의 동원, 연계와 조정
- 3) 보호의 연속성, 책임성 보장
- 4) 서비스보다는 욕구를 중심으로
- 5) 효과성과 효율성 중시
- 6) 문제해결과정
- 7) 욕구 개별화, 참여 & 자기결정 촉진
- 8) 전통적인 사회사업의 가치, 지식, 기술 활용



복지서비스  
map



개인을  
위한 팀



전통적  
가치

정상화 Normalization

5

정상화 Normalization

‘특별한 장애나 욕구를 가진 사람이... 가능한 한 일반인이 살아가는 보통의 삶과 유사한 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  
 욕구를 가진 사람의 능력 강화뿐만 아니라...

**사례관리의 개념과 목적을 정리하면.**

클라이언트의 특별한 욕구의 유무에 관계없이  
 일정한 지역에서, 같은 시기에,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으로서  
 이상적인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하는  
지역사회복지의 이념적 기반이 되는 것이다.

6

## 2 자활사례관리의 일반적 과정

과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인테이크(참여 단계)	사정 단계	계획 수립 단계	실행 및 점검 단계	평가 및 종결 단계	사후관리 단계
주요 과업	▶ 초기 상담 ▶ 자활사업 참여 여부 결정	▶ 게이트웨이를 통한 욕구 확인 - 취·창업 욕구 등	▶ 자립을 위한 계획 수립 (IAP, ISP 작성)	▶ 자활 프로그램 발굴 연계·모니터링 ▶ 복지 서비스 및 지원 연계	▶ 자활목표 달성 등 평가 ▶ 종결과 사후 관리 여부 판정	▶ 서비스 연계 ▶ 취·창업 모니터링
기간	3개월(게이트웨이 교정)			3년(사업단 및 취업 지원)		최대 12개월

출처: 중앙자활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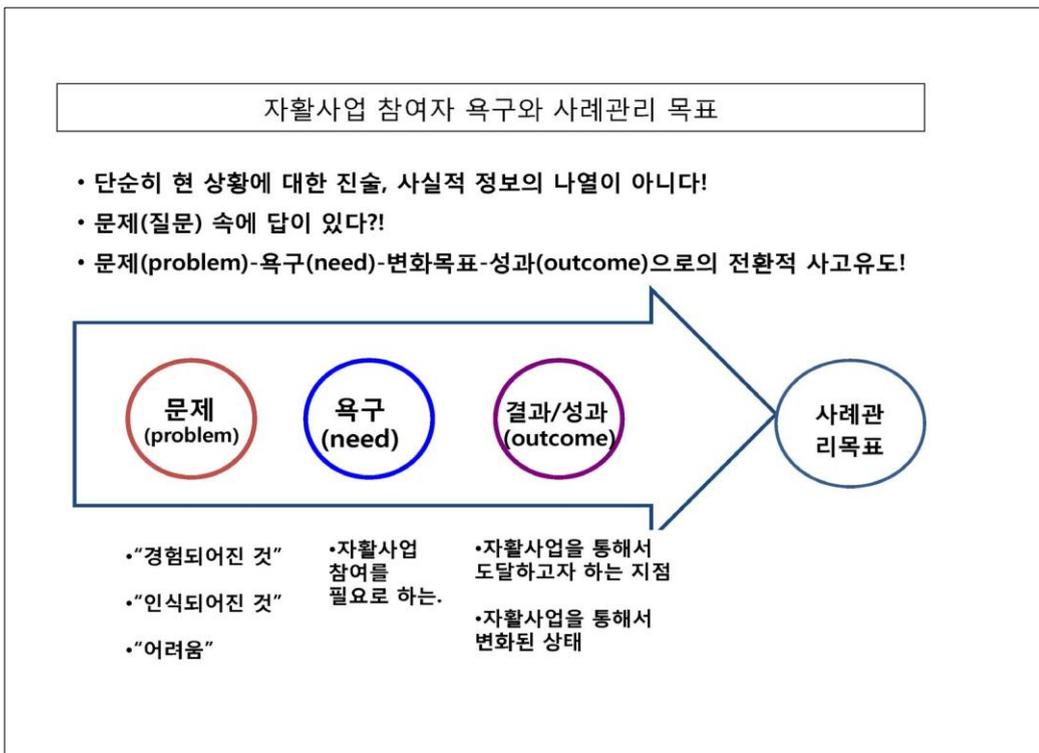
자활사례관리의 특징, 강점  
일 + 복지

### 사례관리 대상자 선정

- 자활사업참여자가 모두 사례관리 대상자는 아니다.
- 사례관리서비스를 수용, 이해하는 참여자가 기관과 함께 변화목표를 위한 동의에 기반하여 진행.



구분	정의	주요개입방법 및 목표
정보 이용자	• 사회복지 관련 정보부족으로 당면한 문제해결이나 욕구충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클라이언트	• <b>일회성</b> 상담 통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정보제공 • 획득한 정보를 활용하여 필요한 자원을 스스로 획득할 수 있도록 함
서비스 이용자	• 개인과 가족의 특정영역의 기능향상이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b>기관의 단위서비스를 필요로</b> 하는 클라이언트	• <b>서비스별</b> 이용자 기준에 따라 적절한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제공 / 각 서비스 목표에 따른 개인과 가족의 기능향상 도모
잠재적 사례관리 대상자	• 포괄적이고 <b>만성적인 욕구 미충족</b> 상태를 경험하고 있어서 <b>지속적인</b> 사회적 지원 통해 개인과 가족의 삶의 회복, 복지수준 향상이 요구되는 클라이언트	• 지속적인 <b>모니터링</b> 통해 적절한 수준의 개입을 할 수 있는 <b>구조마련</b>
사례관리 대상자	• 잠재적 사례관리대상자 중 기관의 사례관리 운영지침에 의한 선정 기준에 부합되는 클라이언트 • 이 중 개인과 가족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사례관리의 주요 절차와 업무수행방식에 동의하고 필요한 서비스계약을 수립한 클라이언트	• (필요시)사례관리유형구분(기본형-일반형-통합형? 단순형-일반형-전문형? 일시관리-유지관리-집중관리?)에 따른 서비스제공방식 결정 또는 사례관리자의 업무관리
위기지원 대상자	• 긴급한 사회적 지원이 없다면 개인과 기존의 물리적 안전이나 심리 정서적 안전을 확보하기 어려운 클라이언트	• 모든 서비스 이용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최대 3일 이내에 개인과 가족의 최소한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직·간접서비스제공 • 물질·물리적 보호 및 심리·정서적 지원 통해 개인과 가족의 <b>위기 안정화 및 일시적 안전 확보</b> • 총 개입기간은 1개월이 넘지 않도록 하며, 위기안정화 이후 필요시 사례관리대상자로 등록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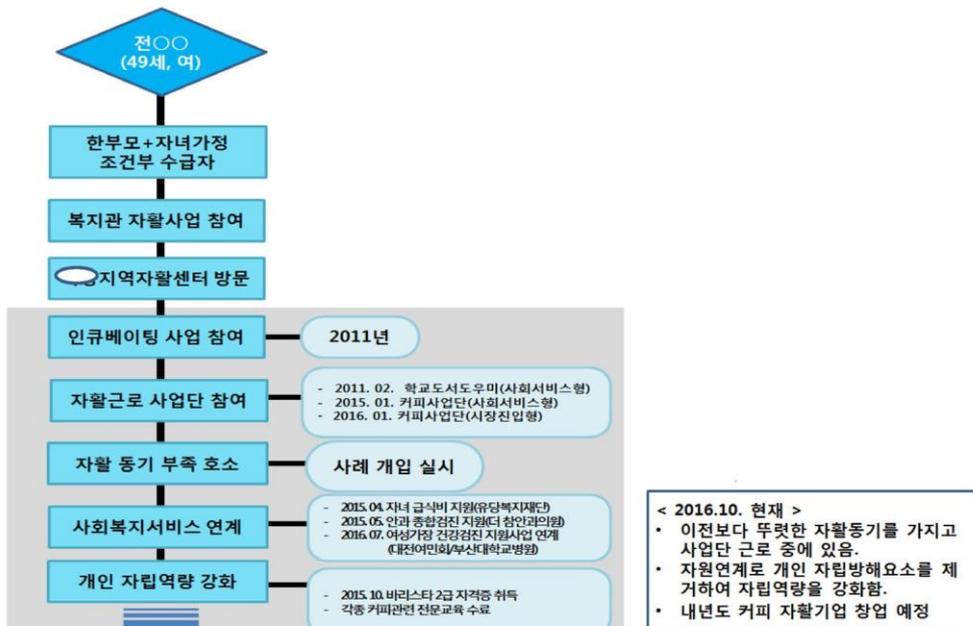
실천 사례 1> 자활사업 참여를 통한 가족기능 회복.

**곽 ○○, 여, 조건부수급자, 79년생(39세)**

남편: 직장적응력 낮음, 간질 / 자녀: 초1, 학교적응력 낮음, 골수암  
 개입기간 : 2013. 8 ~ 2016.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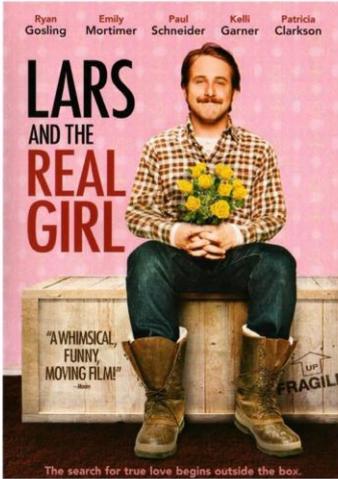
	개입내용	개입결과	자원활용
배우자	-자활센터 근로를 안내 - 교육 정보제공 -취업 정보 안내	-자활근로 인큐베이터 과정참여 -자활센터 근로 -적성, 직업선호도 검사 실시	-구청, 희망복지지원단, 고용센터
자녀	-무료간병 서비스 안내 -보건소 연계, 심리치료 연계	-간병인 파견, 암 치료비 전액 지원, 언어치료 지원	-복지간병, 구보건소, 건강가정지원센터, 굿네이버스
신체적 문제	-건강관련 자원연계	-건강검진	-한국건강관리협회
대인 관계	-가족상담 -자녀 양육에 대한 인식 개선	-경청하고 수용하는 태도로 변함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이야기 하며 부드러운 어조로 대화, 부모상담 실시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증진센터, 굿네이버스, 노사발전재단

실천 사례 2> 자활사업참여에 대한 동기가 부족한 대상자



### 3 사례관리 운영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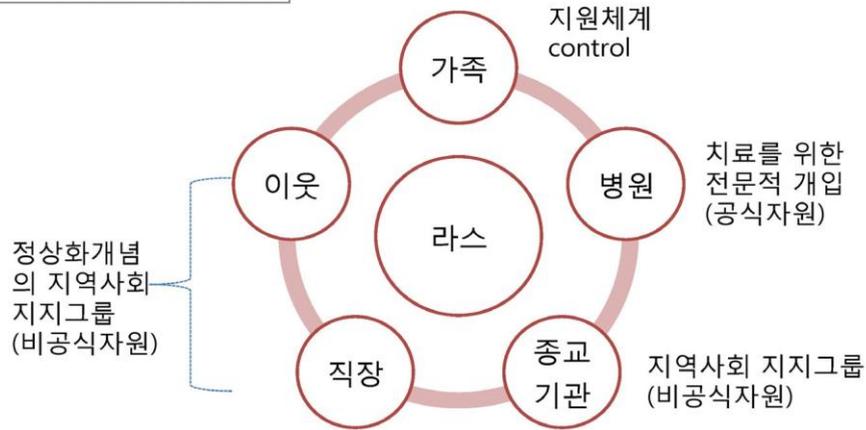
그들은 어떻게 '라스'를 돕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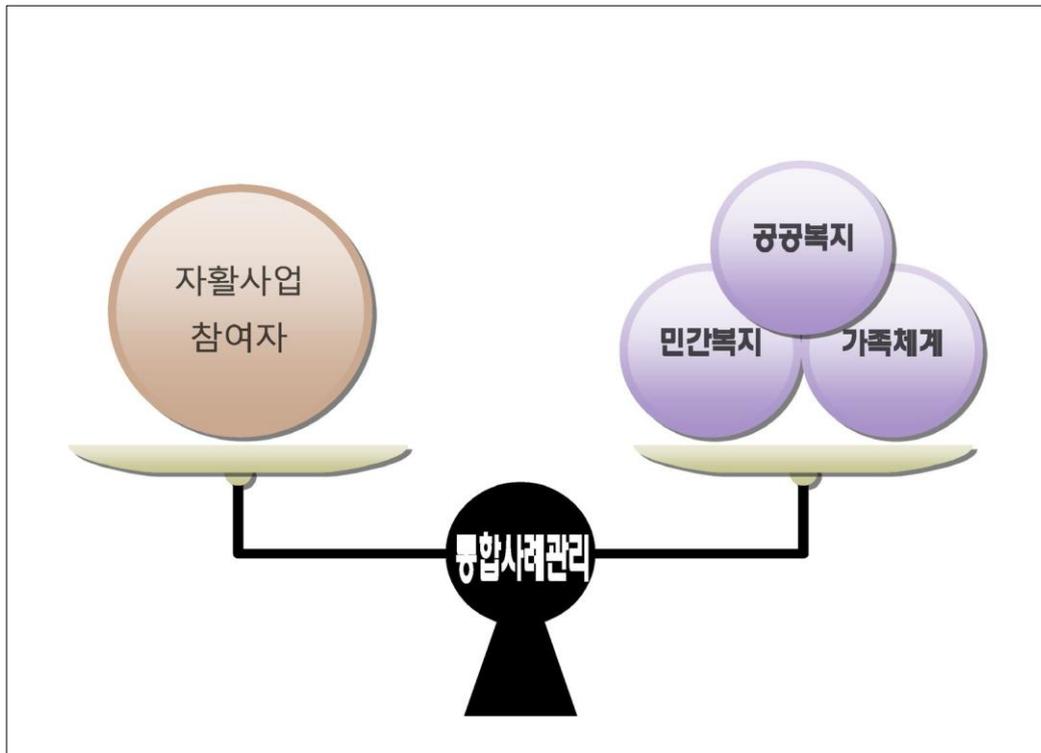


남에 대한 배려가 깊고 착한 심성의 '라스'. 결혼한 형의 바로 옆집에 살고 있는 그는 너무나도 수줍음이 많은 청년이다. 직장에서 관심을 보이는 여자 동료의 호의도 모른척하고, 매번 식사에 초대하는 형수도 부담스러워 어떻게든 피하는 데에만 급급한 대표 소심남.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여자친구를 소개하겠다고 하자 외롭게 사는 그가 안쓰럽기만 했던 형과 형수는 뭘 듯이 기뻐하며 라스와 여자친구를 저녁식사에 초대한다. 그런데 웃기 없는 그가 조심스럽게 소개한 여자친구 '비앙카'는 다름 아닌 리얼 돌(Real doll)!! 너무 놀라 말을 잊지 못하는 형 부부. 라스는 비앙카를 교회와 직장 파티에 데려가고, 어릴 적 즐겨 놀던 호숫가에도 함께 가는 등 본격적으로 데이트를 시작하는데...

내겐 너무 사랑스런 그녀 Lars And The Real Girl, 2007 \_

'라스'의 돕기 위해 작동하는 지원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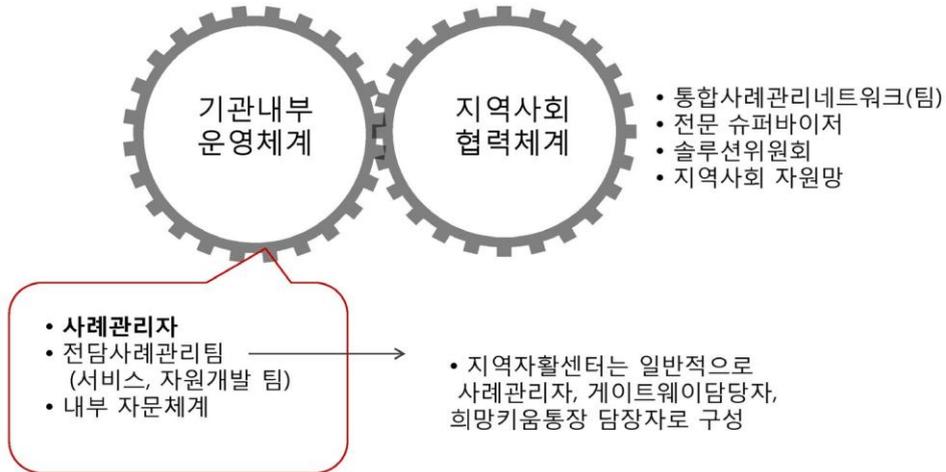
### 1. 사례관리 운영체계의 필요성

- 사례관리는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통합적 서비스를 전달하는
- 작동체계이며, 포괄적 프로그램이 확실히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의 기제 (mechanism)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운영체계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 운영체계의 효과

- 1) 서비스대상자의 **발굴 및 의뢰** 활성화
- 2) 서비스대상자의 **누락과 중복** 방지
- 3) 서비스 제공자들 간의 **협력과 연계** 활성화
- 4) **지역사회자원** 효율적 활용 및 활용능력 강화
- 5)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삶의 질 극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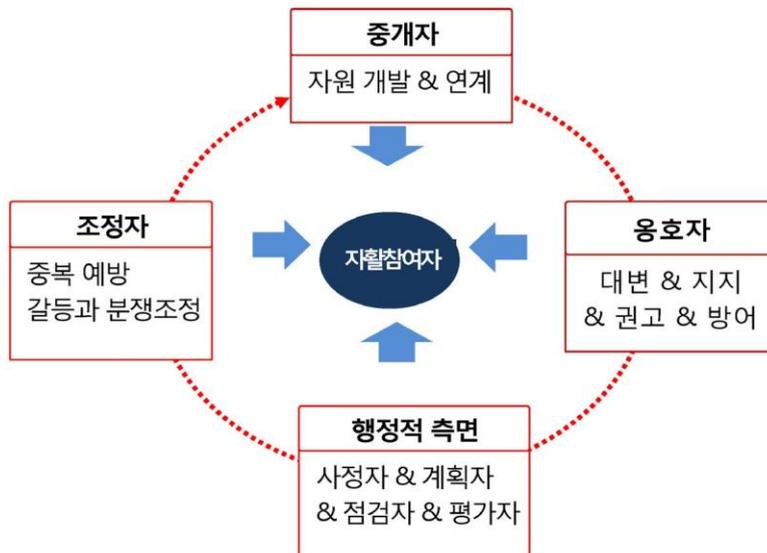
## 2. 일반적인 사례관리 운영체계



17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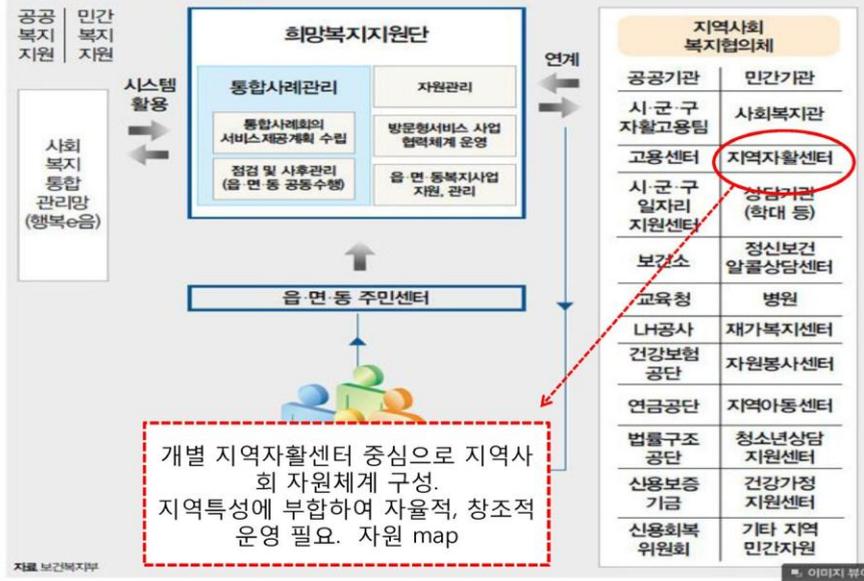
## 3. 기관내부운영체계에서 사례관리자의 역할 \_ 업무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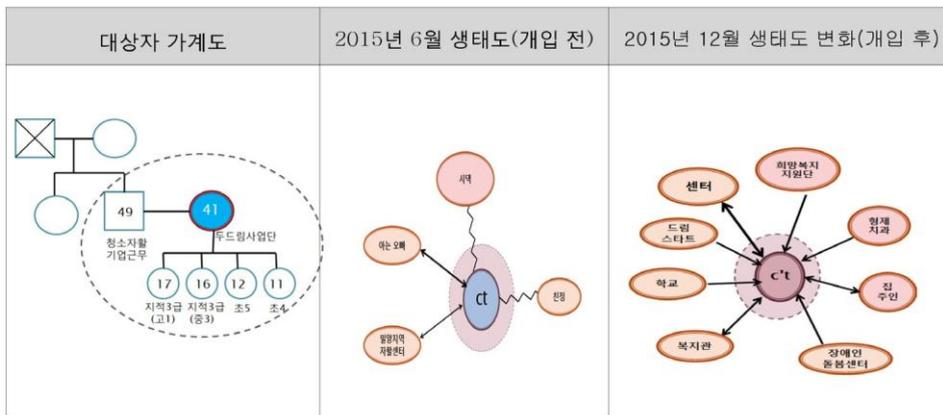
18

#### 4. 기관외부, 지역사회 조직과 운영체계

##### 회망복지지원단 운영체계



#### 실천 사례 3> 사례관리 네트워크(운영체계)를 통한 반응역량 향상



#### 7. 앞으로 계획

1. 이사가 완료되었지만,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 할 수 있도록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상담을 실시 단, 전 보다 상담 횟수를 줄여 참여자가 자립·자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함.
2. 생계급여 초과금액을 10개월 이내 환수 완료하기.
2. 자녀 양육문제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토요&방학 프로그램 연계.
3. 자산형성을 위해 내일키움통장 가입 예정.

## 실천 사례 4> 자활사업 참여자의 새로운 이슈

### <사례관리대상자 선정사유>

평균참여연령이 50대 후반을 웃도는 센터에 20대 건강한 청년이 의뢰되었을 때 느꼈던 당혹감이 아직도 남아있다. 너무 어린 나이여서 내담자의 처한 상황이 안타까웠으나 라포를 형성하고 내담자가 세상 밖으로 나오기로 결정하기까지의 시간 또한 짧지 않았다.....

### <사정단계>

..... 비위생적인 주거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가정방문을 했다. 11평 아파트에서 큰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작은방 한 칸은 그 강아지의 똥으로 가득차 산을 이루고 있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위생문제였다. 밤을 새워 게임을 하는 불규칙한 생활로 자활센터에 출근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문제로 사업단 배정이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긴급 사례회의를 열었다.

### <계획수립단계>

제시된 요구	이용가능한 자원	내/외적 장애물	합의된 목표	실천계획
<b>합의된 목표</b>				
전문의 상담 후 진단				
출근시간 적응하기				
노트북을 사무실에 놓고 가기				
입학상담				
집안청소 / 쓰레기수거 / 빨래 / 소독방역 / 강아지분양				
시급한 공과금 해결 후 저축하기 생활화				

## 4 사례관리 사업에서 만나는 여섯 가지 도전

### 1. 사례관리 실천을 위한 역할 인식과 여건 조성

사회복지사의 역할 인식 고양 / 사례관리 실천을 위한 다른 업무 조정 / 사례관리를 위한 교내 외 운영 시스템 구축 / 사례관리 법제화 / 올바른 사례관리 평가

### 2. 사례관리자 역량강화

관점과 이론 / 면접기술 / 개별·가족상담에 대한 이해 / 정신병리의 이해 / 자원개발 및 조직화 / 기록(recording)기술

### 3. 사례관리자를 위한 전산 솔루션 개발 및 활용

사례관리를 위한 문서량 증가 (업무지원 전산솔루션 필요)  
-> 사업의 표준화 / 활동의 산출 및 성과 집계

#### 4. 협력과 갈등관리

기관 내부에서 팀 간 협력 / 공공과 민간 간의 협력  
 사회복지 기관간 협력 / 서비스(자활사업) 영역 간 협력  
 / 통합사례관리 운영 및 참여

#### 5. 사례관리자의 소진(번아웃) 예방

대상자 변화의 어려움(심적 부담) / 사례관리 업무의 난이도  
 소진은 어떻게 시작되나. 소진을 넘어서는 개인과 기관의 전략

#### 6. 시지프스의 신화 극복

사례관리는 시지프스에게 내려진 형벌?  
 노동시장의 막다른 길에 온 참여자를 대하는 태도  
 인간은 진화한다. 희망의 고취

## 사례관리 - 클라이언트 중심으로 헤쳐 모여!!



~가 인간으로서  
 품위와 존중감  
 을 회복하도록,

지역사회  
 공적/비공식적  
 복지자원들이....

~ 모이도록 서비  
 스를 관리하는 것.

강의에 대한 피드백이나 질문을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042)471-3341 / 010-3467-7699 / teomina@hanmail.net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KOHI 블로그	<a href="http://blog.naver.com/kohipr">http://blog.naver.com/kohipr</a>
KOHI 페이스북	<a href="http://www.facebook.com/kohipage">http://www.facebook.com/kohipage</a> <a href="http://www.facebook.com/kohi">http://www.facebook.com/kohi</a>
KOHI 트위터	<a href="https://twitter.com/kohitwt">://twitter.com/kohitwt</a> <a href="http://kotiss.kohi.or.kr">http://kotiss.kohi.or.kr</a>
한국자활연수원 홈페이지	<a href="https://www.facebook.com/KOHJA">https://www.facebook.com/KOHJA</a>
한국자활연수원페이스북	<a href="https://www.facebook.com/KOHJA">https://www.facebook.com/KOHJA</a> HWAL

1

2017 1 23  
:  
:  
:  
2 187  
: 043-710-9000 / 043)710-9009, 9139  
: [www.kohi.or.kr](http://www.kohi.or.kr)

: 1 143  
: 043)841-3700 / : 043)841-3769

